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21
----------	-------

발의연월일 : 2026. 10. 7.

발 의 자 : 김성원 · 이현승 · 김선교
박충권 · 이상휘 · 안철수
김용태 · 안상훈 · 김종양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

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제1호”로, “호의”를 “목의”로, “5”를 “5(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주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본점”으로, “출자지분”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

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인구감소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u>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 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u>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 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 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u>① ----- ----- 제1호--목의----- ----- -----5(본 점 또는 주사무소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기술 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전문화사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 -- ----- ----- -----.</u> 1. <u>주식</u>----- 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신 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
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⑤ ~ ⑦ (생 략)

가. 인구감소지역

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
소관심지역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10년

⑤ ~ ⑦ (현행과 같음)